

1713년 崔壽學 · 金東白 相訟文書

■ 대구 경주최씨 백불암(百弗庵) 최흥원(崔興遠) 가문의 민원·소송문서에 대하여
한국의 전통사회, 특히 조선시대에는 이른바 ‘訴訟社會’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개인간 지역간 신분 계층 사이에 갈등이 滋甚했다. 조선시대 지방 守令의 하는 업무 가운데 약 5할 이상이 재판업무였을 정도였다. 고문서에 등장하는 소지(所志) 백활(白活)의송(議訟), 재판문서인 결송입안(決訟立案) 등 급(臚給) 등이 이에 관한 문서이다. 이들 문서에는 전통시대 우리 민족의 국민성이 力動的이고 改革的인 성향과 함께 誇張性 便法性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만연한 소송사건에서 상대방에 대한 자기 중심적 주장을 ‘講張(꾸미거나 속여서 주장함)’이라 표현했다. 이에 일제시기 일본 위정자들을 우리의 국민성이라고 誤解, 貶下하기도 했다. 대구 부인동 경주최씨 가문에서 작성된 17-19세기에 작성된 소지(所志) 원정(原情), 입안(立案) 등 15,000 여점의 고문서가 전한다.

1. 1713년 崔壽學 原情 1

가. 문서개요

- 강독교재 하 208~9면
- 작성시기: 1713년(숙종39)경의 草本 혹은 후대 전사본.
『承政院日記』 479책 (탈초본 25책) 숙종 39년 7월 21일 병인 25/62 기사 1713년 康熙(淸/聖祖) 52년.(金鎭圭 등이 입시하여 崔壽學의 죄목과 처리에 대해 논의함)
- 작 성 자: 崔壽學(1652~1714)
- 수 취 자: 大邱都護府
- 金東白과의 相訟건
武人출신 양반 崔壽學과 平民 출신 金東白이 최씨 가문이 養山한 곳에서 땔나무를 斫伐, 사적 형벌(私門亂杖), 저수지에서의 물이용 등을 벌인 소송사건.
- 주제어 : 就山負柴, 捉致毆打, 白晝裸體俯瞰, 散髮告官, 一足指浮氣, 私門 亂杖五十度, 樵牧奪衣服斧斤槌槌, 長養柴木燔瓦分利, 柴炭發賣 徵價村人, 鎭營燔瓦分用 取三分之一 納柴取瓦, 私堤貯水專利,

나. 정서

- 01 白等 金東白妻金召史呈議送內 今月初二日 就山負柴
- 02 是去乙 矣身捉致毆打 私門亂杖五十度是如 問目內辭緣
- 03 是置有亦 同東白 今月初二日良中 矣所居案山壓近之處
- 04 晨登斫柴是乎矣 白晝裸體俯瞰矣家內是去乙 矣身不勝驚
- 05 駭 使奴捉致是乎則 同東白滿身全無所掩 赤體之狀 事涉
- 06 殊常 有若惹起者是去乙 矣身只令結縛 以爲告官處置
- 07 之計而已 元無一度下杖之事是如乎 同東白卽令其妻 被打重
- 08 傷是如 散髮告官爲乎所 欲令矣身驅入於罔惻之境是如可

09 幸賴城主神明之政 卽致東白親審傷處是乎則 元無
10 所傷處 只有一足指浮氣而已是乎等以 城主洞燭其誣訴之
11 由 只囚矣奴是如乎 不意今者 東白又使其妻誣訴營門 私門
12 亂杖 至於五十度是如爲乎所 初二日果爲五十度亂杖 則初三
13 日營門親審時 元無傷處 萬無其理 一夜之間五十度亂
14 杖處 何至快完如常之境乎 舉此一款 其矣所謂轉仆荊棘 解髮
15 結縛等說 皆歸虛套是乎旡 矣身養山近處 往來樵牧乙 或
16 奪衣服斧斤 或爲撻撻 又於長養柴木乙 燔瓦分利是旡
17 柴炭發賣 徵價村人是如 問目內辭緣是置有亦 矣身果有
18 若干養山處 長養雜木 已至累年 則洞內村童輩 皆知禁處
19 元無樵木之事 則安有奪衣服奪斧斤撻撻之事乎 設有
20 迷劣兒童 或來伐柴是乎乃 只示禁斷之意是乎則 其矣奪
21 衣服斧斤等說 盡是誣訴是乎旡 至於燔瓦事段 前營將
22 在任時 新築坐起廳 而所燔瓦木乙 無路辦備乙仍于 矣養
23 山雜木若許燔瓦 則燔瓦分用是如爲去乙 矣身果爲聽從
24 則鎮營燔瓦分用 而矣身段 只取三分之一 則納柴取瓦 自是
25 通行之規 安有以此分利之事是乎旡 設欲分利是乎乃 鎮營
26 亦安有偏廳矣身之言 符同分利之理乎 萬萬無據是乎旡 若
27 干柴木乙 既已赭山盡用於燔瓦之由 一村大小人民 無不共知
28 則亦安有柴炭納上時 更有餘木發賣 徵價之理乎 其矣誣
29 訴構虛之狀 節節昭然是乎旡 至於私堤貯水專利等說 尤爲
30 無據 當初築堰之時 一從堤下作者等所願 合力設築是旡
31 及其蒙利灌溉之時 一從堤下畝庫 使之均灌則 矣身安有
32 獨自專利之事乎 設欲專利是乎乃 矣身畝庫只有若干
33 其餘畝庫 皆是作者 則若干畝灌水 亦安有專利取怨
34 之理乎 上項東白所謂半作畝庫 在於此堤下至遠之處 而元
35 非灌溉之處 亦非自堤引水之地 當此未移秧之日 設使東白
36 許其引水是乎乙喻良置 創開新梁然後 可以引水 則
37 其矣所訴內 矣身專利 而渠未移秧是如爲臥乎所 此非
38 誣訴之甚者乎 大槩矣身半世京洛 專意宦遊是如可
39 中年病蟄 且緣喪敗¹⁾杜戶委巷 積有年所是如乎 到今
40 豪強之名及於矣身病伏之中 爲一常漢所誣訴是乎所 此
41 不過矣持身不謹之致是乎乃 末路人心 亦可痛駭 矣身元無毆打東

1) 1699년 崔壽學(1652~1714)의 아버지 崔慶涵(1633~1699) 사망.

1703년 맏며느리 義城金氏(1674~1703) 사망.

1704년 어머니 英陽李氏(1636~1704) 사망.

1705년 맏아들 崔麟錫(1677~1705) 사망.

1709년 부인 禮安李氏(1649~1709) 사망.

42 白之事 而謂之毆打五十度足杖是如爲乎所 既有
43 案前親審 則不待多卞 而其矣奸狀 自然現露是乎旡
44 亦無養山禁伐時 奪取之事 而謂之奪取衣服斧斤是如
45 爲乎旡 亦無燔瓦分利柴木發賣之事 而謂之分利徵價是如
46 爲乎所 俱是誣訴 而一節甚於一節 此皆矣身之自明 不足
47 取信 則養山下洞長頭頭人 及堤下作者等處 別加推問 則
48 其間虛實 灼然可知是白齊 大槩東白 不知自何處來人 住
49 接者不過二三年 則矣身養山築堰等事乙 萬無所知 而所訴
50 如此 此必有指嗾書給之人是去乎
51 明政之下 若加嚴問 則其矣奸狀 昭不可掩 各別明查 處
52 斷教事

2. 1713년 崔壽學 原情 2

가. 문서개요

- 강독교재 하 210~211면
- 작성시기: 1713년(숙종39)경의 草本 혹은 후대 전사본.
승정원일기 479책 (탈초본 25책) 숙종 39년 7월 21일 병인 25/62 기사 1713년
康熙(淸/聖祖) 52년
金鎭圭 등이 입시하여 崔壽學의 죄목과 처리에 대해 논의함
- 작 성 자: 崔壽學(1652~1714)
- 수 취 자: 大丘都護府
- 金東白과의 相訟건
김동백이 최씨가 양산한 곳에서 땔나무를 작별하여 사적 형벌(私門亂杖)을 가한 사건에 대한 양측의 소송

나. 정서

- 01 白等 金東白妻金召史呈議送內 今月初二日 就
02 山負柴是去乙 矣身捉致毆打 私門亂杖五十度
03 是如 問目內辭緣是置有亦 ○○○同東白 今月初二日良中
04 矣所居案山壓臨之處 晨登斫柴是乎矣 白晝裸
05 體 俯瞰矣家內是去乙 矣身不勝驚駭 使奴捉致是乎則
06 同東白滿身全無所掩 赤體之狀 事涉殊常 有
07 若惹起者是去乙 矣身只令結縛 以爲告官處置
08 之計而已 元無一度下杖之事是如乎 同東白卽令其
09 妻 被打重傷是如 散髮告官爲乎所 欲令矣身
10 驅入於罔測之境是如可 幸賴城主神明之政 卽致
11 同(東)白親審傷處是乎則 元無所傷處 只有足指
12 浮氣而已是乎等以 城主洞燭其誣訴之由 只囚矣奴是
13 如乎 不意今者 東白又使其妻誣訴營門 私門亂杖至
14 於五十度是如爲乎所 初二日果爲五十度亂杖 則初三日
15 親審之際 元無傷處 萬無其理 一夜之間 五十度亂杖
16 何至快完如常之理乎 舉此一款 其矣訴謂轉仆荊棘
17 解髮結縛之說 皆歸虛套是乎旡 矣身養山近處往
18 來樵牧乙 或奪衣服釜斤 或爲撻楚之杖是旡 又
19 於長養柴木 燔瓦分利是旡 柴炭發賣 徵價村
20 人是如 問目內辭緣是置有亦 矣身果有若干養山處 長養
21 雜木而已 至累年 則洞內村童輩 皆知禁處 元無樵木
22 之事 則安有奪衣服奪斧斤撻楚之事乎 設有迷■
23 劣兒童 或來伐柴是乎乃 只示禁斷之意是則 其矣
24 奪衣服斧斤等說 盡是誣訴是乎旡 至於燔瓦事段 前

25 營將在任時 新築坐起廳 而所燔燒木乙 無路辦備
26 乙仍于 矣養山雜木若許燔瓦 則燔瓦分用是如爲去
27 乙 矣身果爲聽從 則自鎮營燔瓦分用 而矣身段 只取三
28 分之一 則納柴取瓦 自是通行之規 安有以此分利之事是
29 乎旡 設欲分利是乎乃 鎮營亦安有偏廳矣身之言
30 符同分利之理乎 萬萬無據是旡 若干雜木乙 旣已楮山
31 盡用於燔瓦之由 一村大小人民 無不共知 則亦安有柴
32 炭納上時 更有餘木發賣徵價之理乎 其矣誣訴構
33 虛之狀 節節昭然是乎旡 至於私堤貯水專利等說
34 尤爲無據 當初築堰之時 一從堤下作者等所願 合力
35 設築是旡 及其蒙利灌溉之時 一從堤下畚庫 使之
36 均灌 則矣身安有獨自專利之事乎 設欲專利是乎
37 乃 矣身畚庫只有若干 其餘畚庫 皆是作者 則若
38 干畚灌水 亦安有專利取怨之理乎 上項東白所

[背面]

39 謂半作畚庫 在於此堤下至遠之處 而元非灌溉之處
40 亦非自堤引水之地 當此未移秧之日 設使東白許其
41 引水是良置 創開新梁然後 可以引水 則其矣所
42 訴內 矣身專利 而渠未移秧是如爲乎所 此非誣訴之
43 甚者乎 大槩矣身半世京洛 專意宦遊是如可 中
44 年病蟄 且緣喪敗杜戶委巷 積有年所是如乎
45 到今豪強之名 及於矣身病伏狀之中 此不過矣身
46 持身不謹之致是乎乃 末路人心 亦可痛駭 矣身
47 元無毆打東白之事 而謂之毆打五十度之杖是如
48 爲乎所 旣有案前親審 則不待多卞 而其矣
49 奸狀 自然現露是乎旡 亦無養山禁伐時奪取之
50 事 而謂之奪取衣服斧斤是如爲乎旡 亦無燔
51 瓦分利柴木發賣之事 而謂之分利徵價是如
52 爲乎所 俱涉誣訴 而此皆矣身之自明 不足取信 則
53 養山下洞長頭頭人 及堤下作者等處 別加推問 則其
54 間虛實 灼然可知是白齊 大槩東白 不知自何處
55 來人 住接者 不過■■(四五)二三年 則矣身養山築堰等事乙 萬
56 無所知 而所訴如此 此必有指喉書給之人是去乎 明
57 政之下 最加嚴問 則其矣奸狀 昭不可掩 各別明
58 查 處斷教事

3. 1713년 慶尙監司 狀啓 抄錄

가. 문서개요

- 강독교재 하권 227면

- 작성시기: 1713년

승정원일기 479책 (탈초본 25책) 숙종 39년 7월 21일 병인 25/62 기사 1713년
康熙(淸/聖祖) 52년

金鎭圭 등이 입시하여 崔壽學의 죄목과 처리에 대해 논의함

○ 前縣監崔壽學, 專事豪橫, 侵困小民罪。鎭圭曰, 罪人元情, 雖自發明, 而以狀啓觀之, 非但武斷鄉曲, 私門亂杖, 極爲駭異, 不可放釋矣。同義禁申鉉曰, 武斷乃是重罪, 而慶尙監司, 不爲詳細究問, 狀啓請罪, 殊涉率爾矣。錫恒曰, 防水·養山等事, 則元情發明矣。上曰, 本律, 何如? 昌集曰, 本律, 似是全家徙邊矣。外方豪強之弊, 近來益甚, 隱匿良民於籬下, 使不得充定軍役, 此罪不可不嚴懲矣。宇杭曰, 豪強之類, 現發未易, 此則既已發覺, 合有懲勵之道矣。上曰, 比本律, 參酌擬罪, 不限年定配, 可也。

- 작 성 자: 李坦(?~1729)²⁾

승정원일기 483책 (탈초본 26책) 숙종 40년 4월 4일 을해 15/24 기사 1714년
康熙(淸/聖祖) 53년

李坦의 후임 差出에 承旨도 擬望하기를 청하는 吏批의 게

○ 又啓曰, 慶尙監司李坦瓜滿之代, 今當差出, 而擬望之人乏少, 承旨竝擬, 何如? 傳曰, 允。

- 崔壽學과 金東白 분쟁건에 대한 경상감사의 장계를 초록한 문서

나. 정서

- 01 啓草拔尾
- 02 牒呈是置有亦 豪右兩班 恣行不法之弊 嶺南尤
- 03 甚 臣到任之後 常所痛禁是白如乎 大丘居前縣監
- 04 崔 乃以么麼武弁 不有朝家禁令 專事豪橫侵
- 05 困小民 不一其端 至於境內寺刹僧徒等處 責懲紙
- 06 地 脅勒侵害 作弊無數是如爲白去乙 事甚駭愕 上
- 07 年冬間 畧施笞奴之罰是白如乎 上項崔不悛旧習
- 08 侵害村民 愈往愈甚是白乎所 大抵東白招辭內 疾
- 09 怨之辭 或不無過實者 而其負鼓回示事段 昨年
- 10 鎭營與崔 同力燔瓦時 監官之所爲云此 則非專

2) 李坦: ? ~ 1729(영조 5). 조선 후기의 종실. 할아버지는 소현세자(昭顯世子 : 인조의 長男)의 셋째 아들인 경안군 회(慶安君 槐)이며, 아버지는 임창군 곤(臨昌君 焜)이다. 소현세자가 일찍 죽자 세 아들이 제주도로 유배되어 만아들 경선군(慶善君)과 둘째 아들 경완군(慶完君)은 그곳에서 죽고, 경안군만이 혼자 살아 남았으므로 그는 소현세자의 혈손이기도 하다. 밀풍군(密豐君)에 봉하여졌다. 1723년(경종 3) 사은사가 되어 청나라에 다녀오고, 1726년(영조 2) 다시 사은사 겸 동지사(東使)가 되어 다녀왔다. 1728년 소론파인 이인좌(李麟佐) 등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훈련대장 남태징(南泰徵)과 그의 아우인 태적(泰績), 이정(李樸) 등이 그를 임금으로 추대하고자 하였다는 말이 퍼지자, 난이 평정된 뒤 사사(賜死)되었다. 남태징 등이 끝내 불복하였음에도 연루피의자들과 무더기로 참형되었고, 또한 소현세자의 현손이라는 신분이 풍문과 관련되어 억울한 죽음을 당하였다. 참고문헌 『영조실록(英祖實錄)』 『선원계보(璿源系譜)』 [네이버 지식백과] 이탄 [李坦]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 11 出於崔是白乎矣 第亂杖窮訊 乃法庭治盜之刑 而崔
- 12 敢於私門結縛殘民 恣施酷刑 無所顧忌爲白乎旆
- 13 堤堰貯水 卽衆民蒙利之地 而崔敢爲私堤獨
- 14 專水利 納價許灌 尤涉駭悖爲白乎旆 環山濶大之
- 15 地 作爲私養 一草一木 專管斥賣 使民不得下手 若
- 16 此 則山林川澤 與民共之之義 果安在乎 本境一保
- 17 怨癡滋甚 及其行查之際 其兩子³⁾隱置不現 代送其
- 18 孽族一人 使官家無所施罪 亦極痛惋是白置 崔蔑
- 19 法害民之罪 所當依法科罪是白乎矣 係是朝官
- 20 自臣營有難擅斷論刑 馳啓爲白去乎 同崔
- 21 前後罪狀 令該府照法處置爲只爲

3) 죽은 맏아들 崔麟錫(1677~1705) 외 차자 최정석(1678~1735, 1713년 당시 36세)과 말자 崔晉錫(1688~1727)을 말한다.

4. 관련 승정원일기 기사

가. 숙종 39년(1713) 7월 21일

승정원일기 479책 (탈초본 25책) 숙종 39년 7월 21일 병인 25/62 기사 1713년 康熙(淸/聖祖) 52년. 金鎭圭 등이 입시하여 崔壽學의 죄목과 처리에 대해 논의함

○ 前縣監崔壽學，專事豪橫，侵困小民罪。鎭圭曰，罪人元情，雖自發明，而以狀啓觀之，非但武斷鄉曲，私門亂杖，極爲駭異，不可放釋矣。同義禁申鉉曰，武斷乃是重罪，而慶尙監司，不爲詳細究問，狀啓請罪，殊涉率爾矣。錫恒曰，防水·養山等事，則元情發明矣。上曰，本律，何如？昌集曰，本律，似是全家徙邊矣。外方豪強之弊，近來益甚，隱匿良民於籬下，使不得充定軍役，此罪不可不嚴懲矣。宇杭曰，豪強之類，現發未易，此則既已發覺，合有懲勵之道矣。上曰，比本律，參酌擬罪，不限年定配，可也。

나. 숙종 39년(1713) 7월 22일

승정원일기 479책 (탈초본 25책) 숙종 39년 7월 22일 정묘 10/25 기사 1713년 康熙(淸/聖祖) 52년 . 閔純 등을 석방하라는 전교

○ 傳，時囚罪人閔純·林時華·李尙說·李世祥·鄭文益，徒配罪人吳遂元，門黜罪人徐命遇，竝放送。時囚罪人李增祿·李命世·金錫文·朴東和·金鼎河，竝罷職放送。李汝澤·白文五·金指南·韓興五，竝削職放送。張大維，遠地定配，崔壽學定配，朴泰恒·吳相采，竝徒配。

다. 숙종 39년(1713) 7월 22일

승정원일기 479책 (탈초본 25책) 숙종 39년 7월 22일 정묘 22/25 기사 1713년 康熙(淸/聖祖) 52년. 義禁府에서 朴泰恒 등을 定配했다고 아뢰

○ 禁府，朴泰恒，廣州良才驛，吳相采，富平金軫驛，徒三年定配。崔壽學，雲峯縣定配。張大維，鵝城府遠地定配。啓。

5. 1713년 就理同苦錄

가. 문서개요

- 강독교재 하권 282면
- 작성시기: 1713년
 癸巳七月日
 승정원일기 숙종39년 7월 22일
 ○ 傳, 時囚罪人閔純·林時華·李尙說·李世祥·鄭文益, 徒配罪人吳遂元, 門黜罪人徐命遇, 竝放送。時囚罪人李增祿·李命世·金錫文·朴東和·金鼎河, 竝罷職放送。李汝澤·白文五·金指南·韓興五, 竝削職放送。張大維, 遠地定配, 崔壽學定配, 朴泰恒·吳相采, 竝徒配。
- 함께 벌을 받은 인물들의 同苦錄

나. 정서

[皮封]

01 癸巳七月日 就理⁴⁾同苦錄

02 京中請門及同道請門記

[본문]

01 朴知事 東和 壬辰生 水下洞橋

02 金同知 指南 甲午生 多坊洞

03 鄭 正 文益 壬寅生 鄉校洞

04 金僉知 鼎夏 癸卯生 水標橋

05 吳同知 相采 丙午生 典醫洞

06 張哨官 大維 丙午生 貫子洞

07 韓僉知 興五 辛亥生 漢陽洞

08 林僉知 時華 辛亥生 延安

[追記]

09 沈參判 李國馨 元萬赫 壯洞人

10 洪錫胤 李邦弼

11 洪夏錫

12 朴世挺

13 池日賓 孫硯揆

14 同道請門 張晟

15 盧大濟 孫必億

16 李厚根 張秋水

17 李贊 郭氣和

4) 就理: 죄 지은 벼슬아치가 의금부에 나아가 심리를 받음

6. 1713년 囹圄同苦

가. 문서개요

- 강독교재 하권 393면

- 작성시기: 1713년

승정원일기 숙종39년 7월 22일

○ 傳, 時囚罪人閔純·林時華·李尙說·李世祥·鄭文益, 徒配罪人吳遂元, 門黜罪人徐命遇, 竝放送。時囚罪人李增祿·李命世·金錫文·朴東和·金鼎河, 竝罷職放送。李汝澤·白文五·金指南·韓興五, 竝削職放送。張大維, 遠地定配, 崔壽學定配, 朴泰恒·吳相采, 竝徒配。

- 함께 벌을 받은 인물들의 同苦錄

나. 정서

- 01 囹圄同苦
- 02 朴監司泰恒 桃渚洞
- 03 李水使世祥 社稷洞
- 04 閔水使純 筆洞
- 05 李城津汝澤 泥峴
- 06 崔光陽壽學 大丘
- 07 李正尙說 靑坡
- 08 李洪川命世 栢子前洞
- 09 金陰竹錫文 抱川
- 10 朴知事東和 曲橋
- 11 金同知指南 河郎橋
- 12 林僉知時華 西江
- 13 金僉知鼎夏 水標橋
- 14 吳同知相采 槐花門洞
- 15 韓僉知興五 漢陽洞
- 16 李海南增祿 尙州
- 17 白萬戶文五 三登
- 18 張哨官大維 苧洞
- 19 掌務官鄭文益 鄉校洞

7. 崔壽學 行錄

가. 문서개요

- 수록: 『止軒集』
- 저자: 崔孝述
崔壽學의 6대손

崔壽學	崔麟錫	崔興漸			
1652~1714	1677~1705	1709~1771	系子生父崔鼎錫		
武科	崔鼎錫	崔興遠	崔周鎭	崔湜	崔孝述
司憲府監察	1678~1735	1705~1786	1724~1763	1762~1807	1786~1870
光陽縣監	以考縣監公遺命	初諱興源	大山門人	初諱湜	從外王考
=禮安李氏	承宗祀	號百弗庵	女 李經祿	=晉陽鄭氏	鄭立齋學
父護軍李地標	崔晉錫	世子翊贊		父鄭宗魯	逸薦參奉
1649~1709	女 李柱嵩	孝行旌門(1789)		女 李宗愚	敦寧府都正
	/李柱安	贈左承旨		女 朴漢倬	=廣州李氏
		東山書院(1820)		女 金昌運	父李東汲
		李光靖撰行狀		女 孫應魯	
		安鼎福撰墓誌銘		女 金川進	
		崔再悅			
		崔興漸			
		以祖考縣監公遺命			
		出爲麟錫后			
		崔興建			
		崔興厚			
		女 柳聖復			

나. 五代祖考監察府君行錄

五代祖考監察府君行錄(止軒先生文集卷之十四/行錄)

公諱壽學字德叟。崔氏出慶州。至生員諱孟淵始居大邱。縣令贈參判諱誠。大君師傅號臺巖諱東巢。生員諱衛南。宣教郎諱慶涵。卽公四世也。妣永陽李氏。牧使廷機女。以壬辰(1652: 孝宗3)正月一日生公。儀幹豐偉。姿性秀美。篤彝倫輕貨財。事父母養極滋味。愼終追遠。克盡誠禮。有妹九人。問遺殆竭心。凡於姻戚知友。周窮恤患。惟恐不及。辛未(1691: 肅宗17)登武科。尋除殿中御史。出知光陽縣。爲政專務清謹。時錦水先生⁵⁾謫在茲邑。隨時問候。極其衛護。瓜遞拜折

5) 錦水先生: 이현일(李玄逸: 1627~1704). 본관은 재령(載寧). 자는 익승(翼昇), 호는 갈암(葛庵). 아버지는 참봉 이시명(李時明)이며, 어머니는 안동 장씨(安東張氏)로 장흥효(張興孝)의 딸이다. 이휘일(李徽逸)의 아우이다.

1646년(인조 24)과 1648년에 초시에 모두 합격했으나 벼슬에 뜻이 없어 복시를 단념하였다. 1652년(효종 3) 중형 이휘일의 『홍범연의(洪範衍義)』 편찬에 참여했으며, 1666년(현종 7)에는 영남 유생을 대표해 송시열(宋時烈)의 기년예설(基年禮說)을 비판하는 소를 올렸다. 1674년에 학행으로 명성이 높아지자 영릉참봉(寧陵參奉)에 천거되었으나 아버지의 상을 당해 나가지 않았다. 1676년(숙종 2) 사직서참봉(社稷署參奉)에 제수되었으나 삼년상이 끝나지 않아 나가지 않았다. 이듬 해 장악원주부(掌樂院主簿), 이어 공조좌랑에 임명되었으나 사은(謝恩)만 하고 곧 고향으로 돌아왔다. 이어 사헌부지평에 제수되었으나 나가지 않았다. 1678년 공조정랑·지평에 임명되었으며, 외척의 용사와 당쟁의 폐단 등을 논하였다. 1686년에는 『홍범연의』를 속성(續成)했으며, 1689년 산림(山林: 재야에 있으면서 학덕과 인품으로 한 학파와 정파를 아우르는 우두머리)에게만 제수되는 사업(司業)에 임명

衝護軍。以不能媚權貴。浩然歸鄉。斷絕世路。教子孫文學。以述先業。竟被權貴家擠陷。謫于雲峯縣。人皆冤之。有暴陳於官者。然終不能伸。以甲午(1714: 숙종40)正月五日。歿于謫所。享年六十三。返葬于廣店村丁坐原。配禮安李氏。通德郎地標女。生員廷俊孫。持平號栗園珙曾孫。己丑十二月六日生。己丑三月二十三日歿。享年六十一。葬同原而在後。男麟錫早歿。次鼎錫以遺命承公祀。次晉錫。一女李柱嵩。次男崙錫。

【참고자료】

▪ 최흥원(崔興遠,1705-1786년)

본관은 경주(慶州). 자는 태초(太初) 또는 여호(汝浩), 호는 백불암(百弗庵). 대구 출신. 할아버지는 최수학(崔壽學)이고, 아버지는 최정석(崔鼎錫)이며, 어머니는 진사 조송(趙嵩)의 딸이다. 1778년(정조 2) 학행으로 천거되어 참봉·교관(敎官)이 되었고, 1782년 장악원주부·공조좌랑을 거쳐 1784년 세자익위사좌익찬(世子翊衛司左翊贊)이 되었다. 어려서부터 침식(寢食)을 잊을 정도로 학문에 열중하였으며, 대대로 달성의 칠계에 살았기 때문에 칠계선생(漆溪先生)이라 일컬어졌다. 백성들의 살기 어려운 정상을 보고 남전향약(藍田鄉約)에 의거하여 규약을 세우고 강학(講學)과 근검으로 저축에 힘쓰게 하며 선공고(先公庫)·휼빈고(恤貧庫) 등을 두어 생활안정을 얻게 하였다. 이것이 당시 부인동동약(夫仁洞洞約)이며 100여 년 동안 지속된 유명한 향약이다. 죽은 뒤 1789년 효행으로 정문이 세워졌고, 이듬해 좌승지에 추증되었다. 저서로 『백불암집』 8권 7책이 있다.

■ 참고논저

되고, 이어 사헌부장령·공조참의에 임명되었다. 이 때 인현왕후(仁顯王后) 폐비문제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사직소를 올렸으나 윤택되지 않았다. 임술무옥의 신설(伸雪: 억울하게 입은 죄를 풀어줌)을 건의했고, 6월에는 산림유현(山林儒賢)의 벼슬인 췌주(祭酒)에 임명되어 경연(經筵)에 참석하였다.

이어 예조참판 겸 췌주·원자보양관(元子輔養官)에 제수되어 거듭 사임의 뜻을 표했으나 윤택되지 않았다. 8월에는 겸직과 함께 대사헌에 올랐고, 9월에는 인현왕후를 위한 소를 올렸으나 윤택을 얻지 못하고 11월에는 분황(焚黃: 관직이 추증될 경우 자손이 추증된 자의 무덤에 가서 누런 종이의 부분을 태우던 의식)을 이유로 고향으로 돌아갔다.

1690년 이조참판·세자시강원찬선에 임명되어 세자책례(世子冊禮)에 참석했고, 다시 대사헌·이조참판에 거듭 임명되었으나 그 때마다 사직 상소를 내었다. 1692년 다시 대사헌에 임명되었으며, 경신·임술 무옥의 신설을 건의하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이어 병조참판·자헌대부(資憲大夫)·우참찬·이조판서에 연이어 임명되었다. 1694년 4월 인현왕후가 복위된 뒤 갑술환국 때 조사기(趙嗣基)를 친구하다가 함경도 홍원현으로 유배되었다.

다시 서인 안세징(安世徵)의 탄핵을 받아 종성에 위리안치(圍籬安置)되었으며, 유배지에서 글을 가르치며 『수주관규록(愁州管窺錄)』을 완성하였다. 1697년 호남의 광양현으로, 1698년에 같은리(葛隱里)로 유배지가 바뀌었고, 1699년에는 방귀전리(放歸田里: 재야로 돌아감)의 명이 내려졌다. 1700년에는 안동의 임하현 금소역(琴詔驛)에 이거했다가, 여기에서 북쪽으로 조금 떨어진 금양(錦陽)에서 집을 짓고 강학하였다.

1701년 인현왕후가 승하하자 석방 명령을 환수했으나 암송되지는 않았다. 1704년에 인덕리(仁德里)로 이거했다가 금소로 돌아와 금양에서 죽었다. 1710년에 죄명이 풀리고 이듬해 복관되었다가 환수되었다. 1718년 영해의 인산서원(仁山書院)에 제향되었으며, 1853년(철종 4) 다시 복관되었다가 환수되었다. 1871년(고종 8) 문경(文敬)이라는 시호가 내려졌다가 환수되었으며, 1909년에 관직과 시호가 모두 회복되었다.

영남학파(嶺南學派)의 거두로 이항(李滉)의 학통을 계승해 이항의 이기호발설(理氣互發說)을 지지하고 이이(李珣)의 학설을 반대하였다. 저서로는 『갈암집』과 편서로 『홍범연의』가 있다.

참고문헌

『인조실록(仁祖實錄)』 『숙종실록(肅宗實錄)』 『국조인물고(國朝人物考)』

[네이버 지식백과] 이현일 [李玄逸]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정조실록(正祖實錄) 순암문집(順菴文集) 영남인물고(嶺南人物考)

경주최씨광정과대보(慶州崔氏匡靖派大譜, 1993, 대구 대보사)

慶北大 退溪學研究所, 『百弗庵 崔興遠先生の 學問과 思想』 2001.

최언돈·최기창·치용원, 『웃골의 인물과 유적』 백불암연구소, 2016.

김용섭, 「朝鮮後期の 大邱 夫仁洞洞約과 社會問題」 東方學志 제46·47·48 합집,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985.

정진영, 「朝鮮後期 鄉約의 一考察; 夫仁洞 洞約의 中心으로」 民族文化論叢 제273집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2.

정진영, 「18세기 일기자료를 통해본 사노비의 존재형태 - 百弗庵 崔興遠의 《曆中日記》(1735~1786)를 중심으로 -」 『古文書研究』 53, 한국고문서학회 2018.